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집 급식의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50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어린이집 급식의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7.

3. 회부연월일 : 2025.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어린이집 급식의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급식으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u>한다</u> .	제33조(급식 관리) ----- ----- -----하고,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생 략) <u><신 설></u>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3조¹⁾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급식 관리와 관련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안내하여 식재료 구매 시 참고토록 하고 있고,

‘급식재료 안심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체·대형마트 참여, 농어촌 산지 직거래시스템 활용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의 급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별로 공급업체와 ‘공통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은 ‘공통계약’ 범위 내에서 ‘개별계약’ 체결로 상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²⁾

□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1)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2)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p. 105-109 참고

결정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어린이집의 급식재료에 있어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어린이집의 급식을 위한 비용은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인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급·간식비)에 포함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에 포함하여 지원 중임.³⁾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

구성 항목	내 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급·간식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교재비, 소모품)
시설비	시설유지비, 실외 교재교구비 등
관리운영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 자료: 교육부

- 교육부에 따르면, 식품비에 관한 경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4)에 따라 현행 규정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15개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5세)에 대해 급간식비를 지원 중이며, 이와 별개로 128개 시·군·구에서도 급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어린이집 급식으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면, 건강한 식재료 제공을 통한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유사 입법례로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⁵⁾」이 있고, 다수 지자체에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⁶⁾」를 시행 중이므로, 별도로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직거래법)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예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5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경기도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취지로 학교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2048호)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2049호)이 발의되어 있음.

또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의 행정구역상 범위, 생산에서 가공은 제외되는 것인지 등 우선 사용 대상이 되는 농축수산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법 적용에 있어 혼선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농산물의 정의 관련 입법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경기도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역농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린이집에서 지역 내 식재료 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의 제약으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종류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조례⁷⁾로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우선 사용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조건으로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의 정서(개정 GPA)가 적용되지 않아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 위배 소지도 있다고 함.

시·도교육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식품비를 지원하기 전에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강원)과 지역 내 시장 진입 제한, 사업자 차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전북)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92

7) 공공급식(어린이집)에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지원을 목적으로 8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